

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

「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1년 12월 17일
영 동 군 의 회 의 장

1. 규 칙 명 : 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2. 개정이유

○ 「지방자치법」이 전부개정(‘22.1.13. 시행)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,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 (안 제4조)
- 의견수렴 (안 제5조)

4. 의견제출

○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및 주소

다. 보내실 곳

- 주 소 :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
영동군의회(조례심사특별위원회)
- 전 화 : 043)740-3044, FAX : (043)740-3039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입법예고 대상 : 「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」

○ 의견 제출자 성명(법인·단체명) :

○ 의견 제출자 주소 :

○ 의견 제출자 전화번호 :

규칙안 내용	의견(찬·반 의견 및 사유)	비고

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동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57조”를 “제65조”로, “(다음부터”를 “(이하”로 한다.

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,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

· 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「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6조(중전의 제4조)제1호 및 제2호의 “(다음부터)”를 “(이하)”로 한다.

제7조(중전의 제5조) 중 “경우출석”을 “경우 출석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」 제57조에 따라 영동군의회에 설치하는 윤리특별위원회(다음부터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제65조----- -----(이하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</p> <p>④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

⑤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.

1.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
2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3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·진술·자문·연구·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
4.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

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안건을 심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「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의견수렴)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·자격심사 전에 자

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,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.

제4조(위원회 회의의 통지) 위원

장은 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 날짜와 시간,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.

1. 윤리 심사 또는 징계·자격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·위원장 및 의원(다음부터 "심사요구 의원"이라 한다)
2. 윤리 심사 또는 징계·자격 심사 대상 의원(다음부터 "심사 대상 의원"이라 한다)

제5조(조사) 위원장은 위원회가

심사 대상 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시켜 조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출석 요구서는 출석일 3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.

제6조 ~ 제11조 (생략)

제6조(위원회 회의의 통지) -----

1. -----

----- (이하 -----

2. -----
----- (이하 -----

제7조(조사) -----

----- . -- 경우 출석 -----

제8조 ~ 제13조 (현행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와 같음)